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 출범(2025. 5. 21.)

- 자의적 검찰 수사와 권한 남용 기소 대신 인권과 법의 지배를 보장해야
- 폭넓은 시민 참여 속에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 추진
-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백태웅 교수가 위원장 맡아
-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설립해야

- 위원장: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의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5월 17일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 출범을 발표하고 위원장에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백태웅 교수를 임명하였다.

백태웅교수는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의장 및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장을 지냈고, 국제인권 전문가로서 국제 무대에서 잘 알려져 있는 인물로, 한국의 사법제도와 인권,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백교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과거사위원회는 국제 사회의 우려의 대상이 되었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법정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사법제도가 자의적 검찰 수사와 권한 남용 기소 대신 인권과 법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하며, 폭넓은 시민 참여 속에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향후 수립될 국민주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 강조한다.

“이재명 후보는 인권변호사 출신이면서 동시에 선별기소와 권한남용 기소의 대표적 희생자입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대개혁을 이루어 갈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는 사법부 독립 및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하여 △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영장독점권폐지 등 검찰개혁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재판부 충원시스템 개선 등 사법개혁 △특별검사제 등 내란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한 독립적 사법 절차 추진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 출범 입장문]

들어가는 말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가 벌인 시대착오적인 계엄령과 내란 사태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일궈온 우리 국민의 역사적인 민주화의 성취와 자존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계엄과 내란이 초래한 일차적 위기는 전 국민의 강력한 민주 역량으로 일단 넘겼지만, 내란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새로운 헌법질서를 공고히 세우며, 국내외적인 도전을 넘어 국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국가적 발전의 도약대를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법제도는 독재와 권위주의를 거치며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자유권 및 평등권 등 헌법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여러 개선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단계 및 재판 등 일련의 사법절차에서 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사법부 내외의 권력의 카르텔로부터 사법부 스스로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내란수괴 및 그 종사자들에 대하여 대한 내란죄 및 권한남용죄의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재판은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검사들에 의한 특검 절차의 개시도 역시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검찰과 사법개혁을 이루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내규를 위반하면서 대법원 소부 사건을 졸속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관들에게 제대로 사안을 검토하고 판결 내용을 협의하고 숙고할 시간과 기회가 보장되지도 못했습니다.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제대로 개혁되지 않은 사법부 내부권력로부터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오해를 불러 일으키면서까지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뒤엎고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내부적 반성과 책임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는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오랜 기간 동안 대상을 선별하여 기소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야당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탄압해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인사권을 권 권력자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선별적으로 수사를 회피하거나 불기소함으로써 사법정의의

실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선별적 권한 남용적 검찰 수사와 기소, 자의적 압수수색 등을 끝내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인권과 법의 지배를 보장하는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과 내란죄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함께 공존하고 균형 있게 견제할 수 있도록 삼권분립의 체제를 새로이 정립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검찰 및 사법개혁 과제

이같은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법부 독립 및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정의 실현을 국민주권정부의 중요한 원칙 중의 세울 수 있도록 폭넓은 논의와 숙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혁을 추진하려 합니다.

첫째,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선별 수사, 선별 기소, 권한남용 기소 등 검사의 업무상의 잘못에 대한 징계, 파면 등 처벌 제도 도입

△경찰청과 검찰청, 공수처의 기관장 임명에 국회 동의 절차 마련

둘째,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 하여야 하겠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온라인 재판 제도, 대법관 정원 확대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 -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재판관 충원 및 운용 시스템 개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충원 및 임명 절차 개선, 사법인사위원회 설립,

△헌법재판 절차, 대법원 재판 운용 절차 개선

△헌법 제 84 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면책특권 형사소송법 반영¹

¹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과 사법부는 새로이 출범하는 행정부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 84 조에 따라 형사소추의 전면 중지를 선언하여 대통령의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체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나라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되어 있고, 현직의 대통령을 사법부가

셋째, 내란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한 독립적 사법 절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별검사제와 재판부의 독립성 강화방안 마련

△내란 방지를 위한 입법적 장치 마련

△수사, 기소, 재판의 과정에서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 보호 조치 강화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성숙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모범 세울 것.

넷째,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러 당사자들 논의 속의 개혁안 확정 및 법규 제. 개정 추진

△추후 진행될 헌법 개정 논의 속에서 국회 개헌 특위와 긴밀한 협력

맺음말

이전 정권에서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추진되었지만 많은 부분이 아직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폭넓은 시민 참여 속에서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수립될 국민주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며, 향후 설립될 국회 개헌특위와 함께 K-민주주의를 세계 속에 정립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법제도 개혁은 단기간에 이루어 지기 어려우며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계엄과 탄핵 등 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엘리트 순혈주의에 대한 비판이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선별 기소나 사법의 정치화 모두 소수의 법조 카르텔이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을 통하여 법원과 검찰, 학계 및 사회 단체, 일반 시민 등 여러 분들과 의견을 나누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함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재판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그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 84 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을 정립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도중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연방 선거 방해 사건, 플로리다의 연방 기밀 문건 사건, 뉴욕 업무 기록 위조 형사사건, 조지아 주 선거방해사건 등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뉴욕주의 형사사건은 2024년 5월 30일 유죄평결이 났다. 하지만 법원은 2024년 9월 18일로 잡혀 있던 형 선고 기일을 대통령 선거 이후인 11월 26일로 연기하였고,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인 2025년 1월 10일 배심원들은 최종적으로 무조건적 방면 결정으로 조건 없이 대통령직 수행을 하게 하였다. 다른 형사 사건들의 경우에도 현직 대통령은 형사 소추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무부의 오랜 정책에 따라 검찰이 공소기각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모든 사안들에 대한 공소기각으로 결론이 내려 졌다.